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5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7. 14) 상정
- 제145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7.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산지원과장 이 도 극)

가. 제안이유

- 「농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2호, 2007. 4. 11. 공포·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136호, 2007. 6.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해당 구의 행정구역으로 함.(안 제3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위원의 정수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의 **선임** 및 위원회의 심의·조정 시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의견청취·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의결년월일	2008. 7. 18 (제145회)

제출년월일 : 2008. 6. 3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농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2호, 2007. 4. 11. 공포·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136호, 2007. 6.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해당 구의 행정구역으로 함.(안 제3조)
- 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위원의 정수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위원 **선임** 및 위원회의 심의·조정 시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의견청취·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구별로 설치하되, 그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원미구농지관리위원회
2. 부천시소사구농지관리위원회
3. 부천시오정구농지관리위원회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해당 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5.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 그 밖에 농지와 농지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의 처리

제5조(위원회 위원의 정수) 구별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인접한 2개 동부터 4개 동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추천 및 선임)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규칙 제5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영

제64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선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동거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심의·조정의 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친척 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가 승인이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농지관리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제5조 관련)

(단위: 명)

구분 구별	계	구 청 장 (위원장)	농민대표위원	농업 관련 기관 추천위원
원 미 구	10	1	8	1
			역곡1동 2 역곡2동 1 춘의동 3 약대동 2	농업협동조합 1
소 사 구	11	1	10	
			소사본1동 1 소사본3동 1 범박동 4 괴안동 1 역곡3동 2 송내1동 1	
오 정 구	14	1	11	2
			성곡동 2 원중1동 2 고강본동 1 고강1동 1 오정동 4 신흥동 1	농업협동조합 1 한국농촌공사 1

[별지 제1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서

임차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경과 임대를 결한 대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경농 대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 ○○구청장(직인)

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각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주소지거주기간	20 . . . ~ 20 . . . (년 월)			
	⑤ 영 농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⑥ 최 종 학 력	학교(졸업, 중퇴)			
	⑦ 주 요 경 력				
영 농 현 황	⑧ 소유농지 (단위: m ²)				
	전	답	과수원	시설원예	계
⑨ 임차(임대)농지 (단위: m ²)					
전	답	과 수 원	시설원예	계	
⑩ 주재배 작물 (단위: m ²)					
작 목 명	재 배 면 적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선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축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을 부천시 ○○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직인)

〈관계법령발췌서〉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시행자에게 그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구역
2.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탁·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불 방법,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

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구(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관할 구역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지역 특성과 농지 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제45조(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관할 시·구·읍·면의 장
2. 관할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인 시·구·읍·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자
3. 관할 시·구·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한국농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명
- ③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 농지의 면적이 넓은 시·구·읍·면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④위원장은 제46조제3호에 따른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⑤위원의 임기·선임·해임,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농지법 시행령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2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7. 제32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제3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61조(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①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위원의 정수 등) ①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를 말한다.

제63조(위원의 임기)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4조(위원의 선임)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제65조(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징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도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6조제4호에서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약에 관한 확인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3>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등) ①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현행 조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0. 12. 06 조례 제1069호

개정 1993. 08. 09 조례 제1238호

개정 1994. 01. 08 조례 제1259호

개정 1996. 07. 18 조례 제1433호

개정 1999. 07. 29 조례 제1663호

개정 1999. 09. 08 조례 제1689호

개정 2001. 04. 02 조례 제18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미구 농지관리위원회
2. 소사구 농지관리위원회
3. 오정구 농지관리위원회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당해 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인근 2내지 4개동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삭제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기타 농지와 농지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의 처리

제5조(위원회의 위원정수) 구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장이 포함된 동을 대표하는 단체의 회의(이하 "주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중 농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할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

단, 구청장이 추천한 자중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를 다시 추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총회를 거쳐 구청장이 추천한 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결격자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업무수행) 위원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제9조(조례개정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부칙 <1990. 12. 6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9 조례 제12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별표 2"의 농지임차료 상한이 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별표 2"중 남구, 중구의 구분을 두지않고 이 조례 개정 당시의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관할하는 동을 그 구의 관할로 한다.

부칙 <1994. 1. 8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8 조례 제14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7. 29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8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별표 1)

농지관리위원정수

구분 구별	계	구 청 장	농민대표위원	농업관련기관추천위원
원 미 구	15	1	12	2
			역곡1동 1	
			역곡2동 1	
			춘의동 2	농업협동조합 1
			약대동 2	농촌지도소 1
			중1동 2	
			상1동 4	
소 사 구	13	1	12	
			소사본1동 1	
			소사본3동 1	
			범박동 4	
			괴안동 2	
			역곡3동 2	
			송내1동 1	
			송내2동 1	
오 정 구	17	1	14	2
			송곡동 5	
			원종1동 2	농업협동조합 1
			고강1동 2	농지개량조합 1
			오정동 4	
			신흥동 1	